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여부 관련)

1. 경기도 건축디자인과-15570(2021.7.2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이 아닌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II. 5.4에서는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 요청(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기준 9.5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법」 제 4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8 제 1 항에 따라 “법 제 4 조 2 제 1 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 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지방의회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서류(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록의 제출 및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시설사무관

노수환

행정사무관

이채훈

건축정책과장

전결 2021. 8. 4.

김성호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8427

(2021. 8. 4.)

접수 건축디자인과-16536

(2021. 8. 5.)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838 팩스번호 044-201-5574 / rsh4614@molit.go.kr / 대국민 공개

함께 지킨 청렴의식, 함께 누릴 국토교통